충청북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한 철 우

충청북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2월 2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2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14. 12. 31.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변경하고,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법정 감면율에 추가하여 감면율을 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축소(안 제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 축소

·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현행) 취득세의 25% 경감 → (개정) 취득세의 20% 경감

· 그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현행) 취득세의 50% 경감 → (개정) 취득세의 40% 경감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10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물류단지에 대한 감면율이 축소됨에 따라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류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법에서 정한 경감율에 100분의 25를 추가하여 경감

※ 법에서 정한 취득세 경감율 : (시행자) 35% 감면, (입주자) 50% 감면

※ 조례로 100분의 25 범위에서 추가 경감 가능(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4항)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10조의3)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율이 축소됨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시행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법에서 정한 경감율에 100분의 25를 추가하여 경감

※ 법에서 정한 취득세 경감율 : (시행자) 35% 감면, (입주자) 50% 감면

※ 조례로 100분의 25 범위에서 추가 경감 가능(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8항)

##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2014.12.31.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변경하고, 축소된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법정 감면율에 추가하여 감면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도청소재지 부동산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률을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하고, 그 외 지역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변경하며,

둘째,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률이 감소함에 따라 물류산업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법에서 정한 감면률에 조례로 100분에 25를 추가하여 경감하여 주는 것임.

금번 개정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변경하고, 감면률이 축소된 물류단지와 산업단지의 취득세 감면율을 조례로 허용한 범위인 100분의 25를 추가하여 경감하는 것으로 지역 물류산업과

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